플롯 표절에 대한 법원 판결문 연구

Study of Court Decision on Plot Plagiarism

이 문 영, 김 인 철
상명대학교 문화기술대학원 창의콘텐츠 학과

Lee moon-young, Kim in-chul
Dept. of Creativity Contents, GSCT, Sangmyung University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나4904 손해배상 판결판결은 일반적인 어문저작물 표절과 달리 포괄적·비문언적 유사성을 인정받은 사건이다. 실질적 유사성에서 포괄적·비문언적 유사성의 분석을 (1) 등장인물, (2) 줄거리와 플롯, (3) 에피소드 별로 분석하여 표절임을 인정하고 있다. 창작물을 구성하는 사건과 그 배열 형태를 가리키는 플롯은 소설의 창작 요소 중 매우 중요한 부분임에도 표절의 판정에서 거의 고려되지 않아왔다. 본 사건은 특히 이종 장르 간의 플롯을 표절한 경우 법원이 어떻게 판결을 내렸는가에 대한 중요한 자료로 검토할 가치를 지니고 있다.

I. 서론

"2016 출판산업 실태조사"(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 따르면 2015년 전자책 시장의 규모는 1500억~1600억원 규모이며 전자책유통사 매출은 전년보다 25.4%나 증가했다. 전체 출판 시장은 3.8% 감소한 것에 비하면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다.[1]

전자책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분야는 장르소설(전자책 매출의 72%를 차지)이고 그 중에서도 로맨스 소설이다. 이런 이유로 많은 작가들이 로맨스 소설 창작에 뛰어들고 있는데, 이와 더불어 표절 시비도 끊이지 않고 있다. 문장을 그대로 표절하는 경우도 물론 나쁜 행위이지만 다른 소설의 고유한 창작 부분인 플롯을 표절해서 자신의 소설에 이용하는 것은 훨씬 나쁜 행위이며 문화콘텐츠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런 교묘한 표절 방식이 근절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절실하고 법원이 적극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Ⅱ. 본론

1. 용어의 정의

소설과 같은 어문저작물의 경우는 표절의 기준인 실질적 유사성(substantial similarity)에서 포괄적·비문언적 유사성(comprehensive nonliteral similarity)과 부분적·문자적 유사성(fragmented literal similarity)이 있는데, 포괄적·비문언적 유사성은 아이디어와 표현의 구별을 전제하기 때문에 더욱 그 판단이 어렵다. 본고에서는 포괄적·비문언적 유사성 부분만을 다룰 것이다. 포괄적·비문언적 유사성으로 표절 판정을 내린 판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7 선고 2012나4904 판결을 검토해보기로 한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몇 가지 용어를 정의하고 갈 필요가 있다.

표절은 흔히 사용하고 있는 용어이나 법적인 용어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결문에서도 인용되는 경우가 있을 만큼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표절은 기본적으로 무단인용의 한 유형으로 특히 타인의 저작물을 자신의 저작물로 발표한다는 요소가 들어있어서 저작재산권의 침해와 저작인격권 중 성명표시권을 침해하는 것이다.[2]

저작권법에서는 아이디어는 보호하지 않으므로 포괄적·비문언적 유사성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아이디어와 표현을 구분하는 것이다. 창작물품에서 어떤 부분이 아이디어고 어떤 부분이 표현인지는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아이디어와 표현을 구분하는 이론에서 국내 법원이 따르고 있는 것은 유형이론(pattern test)이다.

유형이론은 저작물의 패턴, 즉 사건의 전개과정과 등장인물들 간의 상호작용의 발전 등의 요소를 보호한다는 것이다.[2] 유형이론에서 이야기하는 요소는 문학에서 플롯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서울민사지방법원 1990.9.20 선고 89가합62247 판결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다. 영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의 상영금지를 요청했던 재판의 판결문에서 "두 저작물간에 실질적 유사성(substantial similarity) 즉 사건의 구성(plot) 및 전개과정과 등장인물의 교차 등에 공통점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플롯을 명기하고 있다.

2. 유형이론에 대한 기존 사건 검토

서울민사지방법원 1990.9.20 선고 89가합62247 판결에서 플롯의 유사성이 있으면 실질적 유사성, 즉 표절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해당 사건에서 표절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 1991.9.5 선고 91라79 판결에서도 이와 같은 취지가 되풀이 되었다.

"원저작물(소설)에 대한 2차적 저작물(영화)이 되기 위해서는 원저작물을 토대로 작성된 저작물이 단순히 사

상, 주제, 소재 등이 같거나 유사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두 저작물 사이에 사건의 구성, 전개과정, 등장인물의 교차 등에 공통점이 있어서 새로운 저작물로부터 원저작물의 본질적인 특정 자체를 직접 감득할 수 있어야 한다."[3]

그러나 이 사건에서도 표절은 인정되지 않았다.

대법원 1993.6.8 선고 93다3073 판결에서도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및 감정 그 자체는 설사 그것이 독창성, 신규성이 있다 하더라도 소설의 스토리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저작물이 될 수 없으며"라고 하여 '소설의 스토리'를 특정하여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 판결문에서 이야기하는 소설의 스토리는 단순한 줄거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플롯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점에 대해서는 대법원 1998.7.10 선고 97다34839 판결에서 이렇게 명확히 하고 있다.

"소설의 줄거리의 경우에는 저작자의 창작성이 나타난 구체적인 부분은 표현형식으로서 보호받는 부분도 있다"

즉, 소설의 줄거리의 경우에도 저작자의 창작성이 나타난 구체적인 부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플롯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판결에서도 역시 원칙을 말한 것에 불과하고 해당 사건에서 표절은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나온 사건들은 모두 2차적 저작물 사건이며, 이는 서로 다른 플랫폼에 기반한 표절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서로 다른 플랫폼에 기반한 표절 사건의 경우에는 문언적 유사성을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비문언적 유사성을 검토하게 되는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인정되기가 매우 어렵다.

유형이론에 따라서 표현의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된 사건으로 서울고등법원 1998.8.12 선고 97나53696 판결과 서울지방법원 1999.7.23 선고 93가합16239 판결을 들 수 있는데 이 두 사건은 실용서적의 표절에 대한 것으로 소설의 표절에 대한 것은 아니었다.

3. 유형이론에 따른 표절 판결 검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7 2012나4904 판결은 "더 데드 오브 윈터(the dead of winter, 이하 데오윈)"라는 동성애 로맨스소설(통칭 BL이라고 함)을 "현기증"이라는 로맨스소설이 표절한 손해배상 사건이었다. BL은 남자와 남자 간의 사랑을 다루는 소설 장르인데 이때 남자 한 사람을 여자로 바꾸어 소설을 새롭게 구성하였던 것이다.

1심(서울남부지방법원 2012.4.12. 2011가단13757 판결)에서는 "데오윈과 현기증이 주제, 등장인물, 사건 전개 등에서 일부 포괄적이고 비문언적 유사성들을 가지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가 통상적인 아디이어의 영역을 넘어 원고 소설의 창작성을 무단 이용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다."라고 하였으나 2심에서 판결이 바뀌고 대법원에서 2심의 판결이 확정되었다.

2심에서는 "저작권 침해의 객관적 요건인 실질적 유사성 판단을 위한 자료에는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아닌 '아이디어'나 '주제'가 포함될 수 없으나, 주관적 요건인 의거관계를 인정하는 데 필요한 실질적 유사성 판단을 위한 자료에는 '아이디어'나 '주제'가 포함될 수 있다."라는 아이디어도 증명적 유사성(probative similarity) 판단에 이용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실질적 유사성 검토에서 "극적 저작물의 경우 등장인물이 일정한 배경 하에서 만들어내는 구체적인 사건들의 연속으로 이루어지고, 그 사건들은 일정한 패턴의 전개과정을 통해서 구체적인 줄거리로 파악되어 인물들의 갈등과 그 해결과정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인물들의 갈등과 해결과정은 인물들 성격의 상호관계와 그 대응구도에 의하여 그려지는 것인바, 이는 아이디어의 차원을 넘어 표현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사건들이 일정한 패턴의 전개과정을 통해서 구체적인 줄거리로 나타나는 것을 문학계에서는 플롯이라고 부른다.[4]

본 판결에서 포괄적·비문언적 유사성의 기준은 다음과 같이 명시되었다. 등장인물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저작권 보호대상이 아니나 "구체적이고 독창적이며 복잡한 내면을 가진 등장인물"이거나 "저작물에서 양적, 질적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그 저작물의 핵심적인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현으로 판단한다. 어문적 캐릭터의 경우 이름, 시각적 요소, 청각적 요소, 성격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구체화 되지 않은 추상적 줄거리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나 "사건 전개와 등장인물들의 갈등 및 그 해결과정을 통하여 구체화된 줄거리"는 표현의 영역으로 본다. 특히 특징적인 에피소드를 열네 가지 분석하여 실질적 유사성 여부를 판단하여 표절로 인정했다.

이 사건은 대법원 2015.3.12. 2013다14378 판결로 확정되었다.

Ⅲ. 결론

서로 다른 소설의 플롯을 표절하는 행위의 역사는 길다. 1922년에 박종화가 소설 "형산옥"이 일본소설 "진주부인"을 표절하였다는 것을 비판한 바 있다. 당시 문단의 표절 행위가 빈번하자 동아일보는 1930년에 "문단탐조등"이라는 고정란을 만들어 표절을 적발하기도 했다. 이렇게 표절이 사회적 문제가 된 것은 문예 텍스트가 상품으로 발전하였기 때문이었다.[5]

현재의 상황도 당시와 별반 다르지 않다. 인터넷을 통한 전자책 시장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이런 물질적 성장으로 인해 자신의 빈곤한 창작세계를 타인의 작품을 표절하여 메꾸려는 사람들이 서성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시점에서 포괄적·비문언적 유사성으로 표절의 판정을 내린 점은 크게 평가받아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1] "2016 출판산업 실태조사 - 2015년 기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2016.12.

[2] 이해완, 저작권법(제3판), 박영사, pp 1007-1027, 2015.4.

[3] "한국 저작권 판례집[2]", pp. 66-73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1994.12.

[4] 한일섭, "소설의 플롯 개념", 서강인문논총7, pp. 141-170,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97.12.

[5] 김도경, "문단" 표절 "문제의 계보학적 탐구", 어문학134, 한국어문학회, pp. 137-157, 2016.12.